##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41

발의연월일: 2023. 1. 11.

발 의 자: 박상혁·강병원·김성환

김수흥 · 김윤덕 · 김정호

민형배·박 정·송옥주

윤후덕 • 이소영 • 이정문

장철민 · 정성호 · 진성준

최강욱 • 최기상 • 최인호

의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규정을 두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운행하는 궤도시설에 대하여 1년마다 실시하는 정 기검사 및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 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복합 리조트에서 일어난 스키장 리프트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궤도시설 기계 부품의 파손 및 노후화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만으로는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현행법에는 궤도시설 및 그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노후화된 궤도시설이 고장시까지 사용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검사의 유형에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도록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2조의2 신설 등).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정기검사를"을 "정기검사 및 정밀진단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정기검사를"을 "정기검사 및 정밀진단을"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궤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 6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궤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정기검사를"을 "정기검사 및 정밀진단을"로 한다.
  - 3. 정밀진단: 제작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궤도차량 및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궤도시설(궤도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내구연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궤도 시설과 궤도시설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구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궤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할수 없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정기검사를"을 "정기검사 및 정밀진단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궤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및 사용 중인 궤도시설과 궤도시설 장치 및 부품이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궤도시설과 궤도시설 장치 및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①	제12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	
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	
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	
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	
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	
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10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	<u>제1항제1호</u>
에 따른 <u>정기검사를</u> 받지 아	<u>및 제3호정기검사</u>
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	<u>및 정밀진단을</u>
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1.·12. (생 략) <u><신 설></u>

13. ~ 16. (생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 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 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경우

5.·6. (생략)

<신 설>

11.·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
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궤
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
한 경우
13. ~ 16.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항제1호</u> 및 제3호 <u>정기검사</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항제1호</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항제1호</u> 및 제3호 <u>정기검사</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항제1호</u> <u>및 제3호정기검사</u> <u>및 정밀진단을</u> 5.·6.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1. ~ 3. (현행과 같음) 4
1. ~ 3. (현행과 같음) 4

7. ~ 10. (생략)

③ (생 략)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생략)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은 <u>제1항제1호</u>에 따른 <u>정기검사를</u>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u>경우</u>
7.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안전검사) ①
<u>.</u>
1.·2. (현행과 같음)
3. 정밀진단: 제작일로부터 20
년 이상 지난 궤도차량 및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궤도시설(궤도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기 위
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
시하는 검사
② · ③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1호
<u>및 제3호정기검사 및</u>
<u>정밀진단을</u>

거으	노기	윘서	ᄉ	한다.
ソセ	9/1	$\circ$		인 네.

⑤ (생략)

<신 설>

제32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략)
- 6.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 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 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 7. (생략)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내구연한)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궤도시설과 궤도시설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구연한 을 정하여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 한을 초과한 궤도시설 또는 궤 도시설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 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_
	_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1항제1호 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 및 제3호-----정기검사 및 정밀진단을-----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7</u> 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궤도
	시설 또는 궤도시설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u>자</u>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